

공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청서

1. 공 사 명 :

2. 계약금액 : 금 원정(W)

3. 공사기간 : 2023년 월 일 ~ 2020년 월 일

4. 적용제외 사유

가.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(지급확인제는 적용)

1) 선지급 :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 지급 ()

2) 현금지급 : 개좌개설 불가, 일당지급 등의 사유로 현금지급 ()

3)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()

나.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

1)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
공사(※단, 상용근로자 명단 제출) ()

2)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객관적으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
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()

위와 같이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」(행정안전부예규) 제13장
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 규정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
외를 신청하오며, 위 ‘가’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성금 또는 준공금 지급시 노
무비 지급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겠습니다. 만약, 허위 또는 근로자에게 노무
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되는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아
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.

2023년 월 일

주 소 :

상 호 :

대표자 : (인)

00재무관 귀하